



HOTEL
OLE
INN

ご利用案内

・

Guestroom Guide

・

客房使用指南

・

객실 이용 가이드

숙박 약관

Terms and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Contracts

(적용 범위)

제1조

당 호텔이 숙박자와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그에 관련되는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.

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으며, 이 때는 전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그 특약을 우선합니다.

(숙박 계약의 신청)

제2조

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손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제출해야 합니다.

- (1) 숙박자의 성명
- 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- (3) 숙박 요금(원칙적으로 별표 제1 기본숙박요금을 기준으로 함)
- (4)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2 숙박자가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계속 숙박을 신청했을 경우, 당 호텔은 그 신청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합니다.

(숙박 계약의 성립 등)

제3조

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

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숙박 기간의 기본숙박요금(별표 제1)을 한도 내에서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당 호텔이 지정하는 신청금을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.

3 신청금은 우선, 숙박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됩니다. 만일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되며, 잔금이 있을 경우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 시 숙박자에게 반환합니다.

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할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단,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자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.

(신청금 지불이 필요 없는 특약)

제4조

당 호텔을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의 성립 후, 동항의 신청금 지불이 필요 없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.

2 당 호텔은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할 때,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(숙박 계약 체결의 거절)

제5조

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- (1)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.
- (2) 만실로 인해 적절한 객실의 여유가 없을 경우.
- (3)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(4) 숙박 신청을 한 손님 혹은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「폭력단원으로 인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」(1992년 3월 1일 시행)에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단원 등(이하 「폭력단」 및 「폭력단원」) 또는 그 관계자,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에 소속하는 경우.
- (5)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그 외 단체에 소속하는 경우.
- (6)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법인이며, 폭력단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법인 임원 중에 있을 경우.
- (7)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당 호텔 혹은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 거행하고, 혹은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.
- (8)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정신병자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며, 또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, 또는 만취한 자가 숙박하고자 하는 경우, 싸움 등으로 다른 숙박 손님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거나 혹은 안전을 방해하는 버릇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.
- (9)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의 건강 상태, 혹은 휴대품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 손님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버릇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(10)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전염병자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.
- (11) 천재지변, 시설 고장,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는 경우.
- (12) 시즈오카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.

(숙박자의 계약해제권)

제6조

숙박자는 당 호텔에게 숙박 계약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 당 호텔은 숙박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(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이며, 지불 전에 숙박자가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를 제외합니다.)는 별표 제2에 의해 위약금을 받습니다. 단,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을 응했을 경우에는, 그 특약에 응할 때 당 호텔이 숙박자에게 숙박 계약을 해제 시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숙박자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.

3 당 호텔은 숙박자가 사전에 아무 연락 없이 숙박 당일의 오후 8시(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)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, 그 숙박 계약은 숙박자가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숙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로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(당 호텔의 계약해제권)

제7조

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대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- (1) 숙박자가 숙박에 관한 법령 규정,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혹은 동 행위를 거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.
 - (2) 숙박자가 전염병자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.
 - (3)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는 경우.
 - (4) 숙박자가 「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」(1992년 3월 1일 시행)에 의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단원 등(이하 「폭력단」 및 「폭력단원」) 또는 그 관계자, 기타 반사회적 세력에 소속하는 사람으로 인정될 경우.
 - (5) 숙박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, 또는 기타 단체에 속하는 경우.
 - (6) 숙박자가 법인이며 그 법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.
 - (7) 숙박자가 당 호텔 혹은 호텔 종업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 거행하는 경우, 또는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.
 - (8) 시즈오카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.
 - (9) 숙박자가 객실내 잠자리에서의 흡연, 소방 설비 등에 대한 장난, 기타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사항(화재 예방상 필요한 금지사항에 한한다)에 따르지 않을 경우.
-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, 숙박자가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
(숙박 등록)

제8조

숙박자는 숙박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.

- (1) 숙박자의 성명, 성별, 주소 및 직업
 - (2)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, 여권번호,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
 - (3) 기타 당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아울러 숙박자가 기입하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숙박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 및 아래의 경우에서만 사용하며,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① 손님의 문의에 대하여 당 호텔이 답변을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.
 - ② 당 호텔이 어떠한 이유로 손님에게 연락을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.
- 2 숙박자가 제12조에 정해진 요금 지불을 여행자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경우에는, 전항의 각 항목을 등록할 때 사전에 제시하여 주십시오.

(객실 사용시간)

제9조

숙박자가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입니다. 단,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동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동항에서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요금을 받습니다.

- 체크인 예정일의 오후 3시 이전 체크인 : 1시간 마다 2,000엔
- 체크아웃 예정일의 오전 11시 이후 체크아웃 : 1시간 마다 2,000엔
- 체크 아웃 예정일 오후 1시 이후 체크 아웃 : 1시간당 4,000엔

(이용 규칙의 준수)

제10조

숙박자는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는 호텔 내에 게시된 이용 규칙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- 1 당 호텔 내에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하지 마십시오.
- 개(맹인안내견 등은 제외한다), 고양이, 작은 새, 그 외의 동물, 발화 또는 인화성 물품, 악취를 풍기는 물품, 기타 법령에서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물품은 당 호텔 내에 반입하지 마십시오.
- 2 당 호텔 내에서 도박이나 풍기, 치안을 어지럽게 하는 행위,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언행은 하지 마십시오.
- 3 당 호텔 내의 시설, 비품의 현상을 변경하여 이용하지 마십시오.
- 4 당 호텔 내에서 허가없이 객실을 영업 행위 등의 숙박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.
- 5 당 호텔 내에서 허가없이 광고, 선전물 배포, 물품 판매 등의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.
- 6 복도나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 하지 마십시오.
- 7 호텔 내 착용 복, 실내 착용 복, 및 슬리퍼로 복도 등, 객실, 대목욕탕, 라운지, 아침 식사 장소(2층)이외의 시설을 이용 하지 마십시오.
- 8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건축물, 비품, 기타 물품을 손상, 오염, 혹은 분실시킨 경우에는 상당 액수를 변상해 주셔야 합니다.

(영업 시간)

제11조

당 호텔의 주요 시설물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 기타 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팸플릿, 각처의 게시물, 객실 내의 호텔 인포메이션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1) 프런트 커서 등 서비스 시간
시간제한...없음
프런트 데스크...24시간
- (2) 음식 시설 영업 시간
 - 2층 「라운지」아침 식사 바이킹...오전6시~9시30분
 - 14층 천원 온천 대목욕탕...오후 3시~다음날 오전 10시
 - 대목욕탕 내 사우나
- 2 전항의 시간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

(요금의 지불)

제12조

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출 방법은 별표 제1에 게시된 내용에 따릅니다.

-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현금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사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자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하여 주십시오.
- 3 당 호텔이 숙박자에게 객실을 제공하고,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자가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받습니다.

(당 호텔의 책임)

제13조

당 호텔은 숙박자와의 계약 및 이와 관련되는 계약에 대하여, 이행 또는 불이행함으로써 인하여 숙박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,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그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당 호텔에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.

2 당 호텔은 소방법령에 적합한 호텔로서 「방화우방인정증」을 게시하고 있습니다만, 만일 화재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
(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의 취급)

제14조

당 호텔은 숙박 손님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숙박자의 양해를 얻어,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겠습니다.

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자에게 지불하고,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충당합니다. 단,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보상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.

(기탁물 등 취급)

제15조

숙박자가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분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당 호텔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라도,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에 대한 신고를 요구했을 경우이며, 숙박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는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2 숙박자가 당 호텔 내에 반입하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, 프런트에 맡기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분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 호텔이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당 호텔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라도, 숙박자로부터 사전에 그 종류 및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(숙박자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)

제16조

숙박자의 수화물이 숙박자가 체크인하기 전에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, 그 수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, 숙박자가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 전달하겠습니다.

2 숙박자가 체크아웃 한 후, 숙박자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서 발견되었을 경우,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으로부터의 연락 및 조회를 기다리며 연락을 받은 후, 소유자의 지시를 요구합니다. 만일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 혹은 소유자가 관명되지 않을 경우에는, 발견일을 포함하여 3개월간 당 호텔에서 보관하고, 그 후 해당 귀중품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 그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당 호텔에서 처분하겠습니다.

3 당 호텔에 두고 가신 물품에 대하여 숙박자가 당 호텔에 연락을 하신 경우, 물품의 확인을 한 후, 숙박자가 지정한 날짜까지 프런트에서 보관하겠습니다.

지정하신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 호텔에서 처분하겠습니다.

숙박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의 숙박자가 당 호텔에 직접 방문하거나, 착불로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4 음식물, 담배, 만화·주간지 등의 잡지는 숙박자가 체크아웃 하신 후, 당일 처분하겠습니다. 단, 물건이 미개봉 상태일 경우에 한해 1일간 당 호텔에서 보관하겠습니다.

(주차의 책임)

제17조

숙박자가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, 차량 열쇠의 기탁 여부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주차장소를 안내하겠습니다만, 차량 관리에 대하여는 일절 책임 지지 않습니다. 단,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숙박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, 당 호텔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습니다.

(숙박자의 책임)

제18조

숙박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, 해당 숙박자는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
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산정 방법

(제2조 제1항,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)

		내역
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	숙박요금 (1)	①기본숙박요금, 객실료 ②서비스 요금(①×10%) ③소비세 ④입탕세
	숙박요금 (2)	⑤음식료 및 기타 이용요금 ⑥서비스 요금(⑤×10%) ⑦소비세 ⑧입탕세

【비고】

1. 기본숙박요금(객실료), 음식요금 및 기타 이용요금의 면세에 대하여는, 면세점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, 그 개정된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합니다.

별표 제2 위약금(제6조 제2항 관계)

계약 신청인 수	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	숙박하지 않음	계약해제 시			
			당일	전일	7일 전	10일 전
일반	9명까지	100%	80%	20%		
단체	10명~99명까지	100%	80%	50%	20%	
	100명 이상	100%	100%	80%	50%	20%

(주의)

1. 표시된 비율(%)은 기본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2. 계약일이 단축되었을 경우는, 그 단축된 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(첫날)에 대한 위약금을 받습니다.
3. 단체손님(10명 이상)의 계약내용 중, 일부 계약 해제가 발생했을 경우, 숙박 7일전(그 날보다 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)의 숙박 인원수의 10%(소수점 이하는 올림 한 인원수)에 해당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.